

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 채용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21조)

-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- 2.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
- 3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
- 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- 5.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